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527003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구상금]

전 문

원 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20. 2. 28. 접수 제25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A은 원고에게 25,342,468원 및 그 중 5,784,351원에 대하여는 2020. 10. 7.부터, 19,557,980원에 대하여는 2021. 6. 8.부터 각 2021. 9.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1.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2,75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1. 3.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보증상대처 C은행 운암동지점, 보증금액 12,750,000원, 대출예정금액 15,000,000원, 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20. 3. 31.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5. 3. 2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보증상대처 D은행 수완지점, 보증금액 20,000,000원, 대출예정금액 20,000,000원, 보증비율 100%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 A은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여 2020. 5.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10. 7. C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5,784,351원(= 원금 5,657,748원 + 이자 126,603원)을, 같은 사유로 2021. 6. 8. D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0,060,968원(= 원금 19,939,330원 + 이자 121,63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502,988원을 회수함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 원금은 25,342,331원(= 5,784,351원 + 20,060,968원 - 502,988원), 확정손해금은 137원이다.

라.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신용보증원금과 그 종속채무인 이자 및 대위변제일로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율은 2020. 10. 7. 및 2021. 6. 8.부터 각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2020. 2. 28. 부친인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20. 2. 28. 접수 제25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비롯하여 E조합, F은행, G카드,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대한 대출금 및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광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 원금 및 확정손해금 합계 25,342,468원 및 그 중 원금 5,784,351원에 대하여는 2020. 10. 7.부터, 나머지 원금 19,557,980원에 대하여는 2021. 6.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2019. 3. 21. 이미 체결되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A이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겨우 약 3개월이 지난 2020. 5. 21.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2020. 10. 7.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친인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친인 피고 B와 누나인 L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전라남도 영광군 M 읍전 11011㎡ 이상 끝.

